

##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.

4. 주요골자

○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·등록세 면제

○ 대상 : 광산근로자용 사택, 목욕탕, 독서실, 회관 및 공동변소

5. 검토의견

○ 이조례는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광산근로자용 사택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광산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